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자 노진영

전화 062-231-4322 / 팩스 062-231-4951

보도자료

2022. 11. 24.(목)

제 목

유령직원 등 고용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제11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창)는, '6명의 근로자 인건비 보조금 약 3,2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등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한 결과,
 - 코로나19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22개 보조금 지원 사업 104개 일자리**」에 대하여 104명의 유령직원 등¹⁾을 내세워 인건비 보조금 합계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
 - **주범 2명과 모집책 1명을 구속 기소 · 모집책 2명을 불구속 기소(1명 구속 적부심 석방)하였음**
-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에서 추가 보조금 편취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적인 직접 수사가 개시되자,
 - 피고인들은 범행은폐 등 목적으로 유령직원 등을 상대 '**출석불응 독려**' 및 검찰 예상질문과 허위 답변이 기재된 '**검찰수사 대비 문건**'을 전달하여 연습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으나,**
 - 계좌추적, 주거지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끈질긴 수사로 범행의 전모를 밝혔음
-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불황속에서 고용유지 및 창출,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한 기업체에게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늘어남에 반해 관련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이 완화된 점을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임
- 향후에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 예산이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겠음

1) 허위근로자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직원은 유령직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으나 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한 직원은 허위근로자로 칭하고, 모두 호칭 할 때는 유령직원 등으로 함

1

피고인

- 구속 : A(34세, 갑·을 회사 대표, 주범), B(42세, 병 회사 대표, 주범), C(32세, 자영업, 유령직원 모집책)
 - 불구속 : D(34세, 회사원, 유령직원 모집책), E(33세, 회사원, 유령직원 모집책)
- ※ 유령직원 등 104명 중 가담정도가 중하여 입건된 28명에 대해서는 가담기간, 횟수, 편취 액수, 여죄 성립(허위근무기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등 추가범행) 등 고려하여 처분 예정

2

공소사실 요지

- A는 B, C, D, E와 공모하여 '19. 1.~'22. 4. 갑 또는 을 회사에서 사실 유령 직원 등을 고용할 생각이었으나 마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피해자 광주광역시(또는 대한민국)를 속이고 78명의 근로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863,339,370원 편취[15개 보조금 사업 지원]
- B는 A, C와 공모하여 '19. 1.~'22. 1.경 병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명의 근로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333,295,595원 편취[7개 보조금 사업 지원]
- C는 '19. 5.~'22. 4. A 또는 B에게 유령직원 28명 소개하여 인건비 보조금 349,349,400원 편취
- D는 '21. 2.~'22. 4. A에게 유령직원 25명 소개하여 인건비 보조금 248,900,000원 편취
- E는 '20. 9.~'22. 2. A에게 유령직원 4명 소개하여 인건비 보조금 107,845,160원 편취

3

수사 경과

- '22. 2. 광주 북부서 A, B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
 ※ 송치 범죄사실 : A와B는 공모하여 6명의 인건비 보조금 3,200만원 편취
- '22. 2.~10. 광주광역시 등으로부터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 확보, 1·2차 사무실 등 압수수색, 1·2차 관련자들 계좌 추적, 유령직원 등 50명 조사
- '22. 11. 24. A, B, C 3명 구속 기소, D(적부심 석방), E는 불구속 기소

4

범행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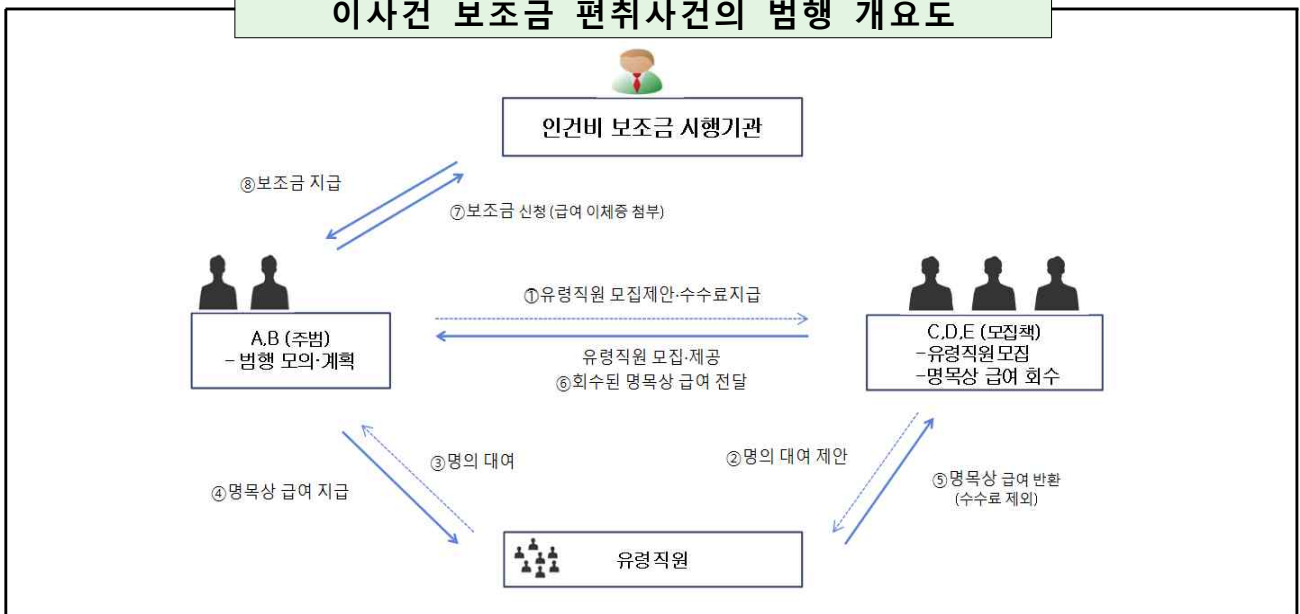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 확대되는 한편,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이 완화된 점 악용

● 피고인들은 사업주가 희망 근로자를 스스로 채용할 수 있는 점, 근로자에게 급여를 선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 코로나19 이후 심사기준·관리감독이 대폭 완화된 점 등 악용하여,

- ① 사전에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에게 유령직원을 제안하여 모집한 후,
- ② 유령직원에게 명목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하였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감독은 현장점검 대신 유선점검을 우선하거나, 사전고지 이후 선별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완화되어 피고인들에게 사실상 현장·유선 점검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

이 사건 보조금 편취사건의 범행 개요도



● 공범 간에 유령직원 번갈아 채용(일명, 풀앗이 채용), 타지역 거주 유령직원은 광주로 위장전입, 실사 점검시 유령직원 근무사실 증명 위해 각종 서류(출장 또는 미팅 관련 서류) 위조, 유령직원으로부터 명목상 급여 회수시 차명계좌 이용하거나 무통장 입금받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함

5

수사의의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속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국가정책의 취지를 몰각하고, 청년들의 '진정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한 매우 엄중한 사건임

- 피고인들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22개 보조금 지원사업의 104개 일자리」에 유령직원 등을 내세워 보조금을 편취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진정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꿈과 기회를 박탈하였음

■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음

- 본건은 'A와B가 공모하여 6명의 근로자 인건비 보조금 약 3,2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등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한 결과,
 - A와 B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C, D 등으로부터 유령직원 등을 소개받아 채용을 가장한 후, 104명의 유령직원 등의 인건비 보조금 합계 약 12억 상당을 편취한 조직적 보조금 편취 사건임이 드러났음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사실 확인

- ▶ 104명의 유령직원 등 소환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출석불응 독려' 등 조직적인 참고인 조사 방해사실 확인하여, 가담정도가 중한 유령직원 28명을 선별하여 피의자로 입건
- ▶ 이후 유령직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제작·배포한 '검찰수사대비 문건'(검찰조사 예상질문과 허위답변,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예상외의 질문시 진술거부권 행사)이 발견되었고, 실제로 위 문건대로 진술하는 유령직원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문건 대비 진술분석 및 재조사 등을 통해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차단

- 그 결과, 주범 2명과 모집책 1명을 구속기소, 모집책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은 피해금을 공탁하고 적부심으로 석방)하였으며 사안이 중한 유령직원 28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중으로 검찰에서는 향후에도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것임

■ 범죄수익의 환수 및 재발방지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환수조치 및 결과통보를 요청할 예정
- 이 사건 수사결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 관리감독 준수 사례를 피해자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본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제도적 미비점과 관리감독 준수사례 전파

▶ 제도적 미비점

- 실사 점검시, 고지하고 실시하는 점검은 사전에 대비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불시 점검을 우선하고, 점검 때 부재중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집중점검 실시 건의

▶ 관리감독 철저 준수 사례 전파

-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주관기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1:1 매칭해 주고 보조금(급여)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하는 방식의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이 부정 지급되지 않고 취지에 맞게 집행됨이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관리감독 준수 사례로 전파 예정